

통신법상의 접속허용의무 위반과 셔먼법 제2조

- Verizon v. Trinko 사건 -

이기종 | 안동대 법학과 교수

머리에

공고하게만 보이던 AT&T의 장거리전화시장 독점이 단파나 위성전송을 활용하는 MCI나 ITT와 같은 혁신적인 통신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은 끝에, 결국 AT&T의 분리를 요구하는 정부의 제소와 이에 따른 동의판결로 종막을 고하게 된 과정은 인상적인 것이었다.¹⁾ 그런데 AT&T의 분리 이후의 통신기술의 발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982년의 동의판결이 자연독점으로 인정해 준 지역전화시장에 대하여도 좀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즉, 케이블 통신망 제공사업자나 휴대전화사업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지역전화역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96년의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은 위의 동의판결에 따라 인정되던 지역전화사업자들의 지역전화고객들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박탈하는 대신 이들 지역전화사업자들도 장거리전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동 법은 또한 다양한 통신사업자들에게 여타 통신사업자들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접근과 상호접속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인정하는 한편,²⁾ 기존의 지역전화사업자들(ILECs)로 하여금 경쟁 지역전화사업자들(CLECs)에게 그 전화망에의 접속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였다.³⁾ 이러한 조치는 장거리전화시장과 지역전화시장 모두에 보다 많은 경쟁을 도입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6년 통신법상의 접속허용의무 위반에

1) 이에 관하여 홍명수, “AT&T의 해체와 그 의의,” 경쟁저널 제105호 (2004) 참조.

2) 47 U.S.C. § 251(a)(1).

3) 47 U.S.C. § 251(c).



대한 행정적 제재에 만족하지 못한 지역전화사업자의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올해 초 선고되면서,⁴⁾ 동 법이 전화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해 충분히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였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1934년 통신법, 1996년 통신법 및 셔먼법 위반이 모두 문제가 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셔먼법 위반 여부, 특히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⁵⁾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뉴욕의 기존 지역전화사업자인 Verizon⁶⁾과 AT&T를 포함한 경쟁 지역전화사업자들은 1996년 통신법에 따라 상호접속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은 Verizon측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들이 그 고객들에게 전화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OSS(operations support systems)에의 접속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T&T는 접속의 지연과 그 품질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뉴욕 공공역무위원회(PSC)에 제소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은 과징금을 포함한 여러 제재조치들을 Verizon측에 부과하였다.

한편 AT&T의 고객 중 하나인 법무법인 Trinko는 Verizon을 상대로 여타 전화사업자들의 고객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Verizon이 그 경쟁사업자들에게 그 전화망에 대한 만족스런 접속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셔먼법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통신법과 같은 특정산업규제법령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독점금지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측은 Verizon이 시장지배력을 의도적으로 획득 또는 유지하였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그러나 연방제2고등법원(the Second Circuit)은 다음의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셔먼법 제

4)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124 S.Ct. 872 (2004), rev'g 305 F.3d 89 (2d Cir. 2002).

5) 미국독점금지법상의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본 사건 판결 이전까지의 논의에 관하여, 이기중,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미국 셔먼법 제2조의 해석론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14집, 107면 이하 (2003) 참조.

6) 이 사건 초기에는 NYNEX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었으나, 그 후 Bell Atlantic, 다시 Verizon으로 바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Verizon으로 통칭하기로 함.

2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첫째, Verizon이 그 전화망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필수설비의 원칙("essential facilities" doctrine)에 저촉된다. 둘째, Verizon이 그 전화망에의 접속을 판매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통신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지역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독점지렛대(monopoly leveraging) 이론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연방제2고등법원은 피고측의 행위가 통신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1996년 통신법은, 동 법이 독점금지법을 "변경, 손상 또는 대체(modify, impair or supersede)"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⁷⁾ 끝으로 항소심 판결은 통신법이 행정적 제재들만을 규정할 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독점금지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해서 통신법상의 행정적 규제에 간섭하는 것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Verizon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법무부는 상고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공식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공동으로 제출하였다.⁸⁾ 필수설비의 원칙이나 지렛대 이론은 서면법 제2조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임에 틀림없으나, 이들 자체가 독립적으로 서면법 제2조 위반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측은 피고의 행위가 서면법 제2조 위반요건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2.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은 파기하면서,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⁹⁾

첫째, 1996년 통신법이 독점금지법을 변경, 손상 또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술한 유보조항(savings clause)의 해석상, 통신법이 독점금지법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나, 반대로 새로운 독점금지법상의 책임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Verizon의 문제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독점금지법 위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i) 일찍이 Colgate 판결¹⁰⁾이 선언한 바와 같이 사업자들은 거래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예외는 극히 엄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표적인 예외로 거론되는

7) 47 U.S.C. § 152.

8)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s Amicus Curiae Supporting Petitioner,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No. 02-682 (U.S. filed May 23, 2003).

9) 반대이견은 없었으며, 3명의 판사가 원고적격과 관련한 부수의견(concurring opinion)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10) United States v. Colgate & Co., 250 U.S. 300 (1919).



Aspen 사건¹¹⁾의 경우, 피고는 자발적으로 수익성이 추정되는 거래관계를 단절하였으며, 또한 반경쟁적 목적을 위해 단기적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한 의도가 나타나 있어, 본 사건과는 구별된다. 본 사건의 경우 상호접속계약은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통신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며, 상호접속의 대가도 통신법에 따라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ii) 소위 필수설비의 원칙은 독자적인 셔먼법 위반행위를 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수설비에의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 사건과 같이 피고측의 전화망에의 접속이 통신법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iii) 피고측의 행위가 지렛대 이론에 의해 셔먼법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행위로 인해 소매시장의 독점화에 성공하게 될 위험한 개연성(dangerous probability)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항소심 판결은 오류이다.

셋째, 통신법이 경쟁의 손상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 이상, 독점금지법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소한 이익은 이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상쇄하지 못한다. 법원이 잘못된 추정에 근거하여 적극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극히 상세한 판결문을 계속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쟁점의 분석

1. 단기적 이익의 희생 요건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던 최근의 사례인 Aspen 사건과 본 사건을 구별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전자의 경우 피고에게 반경쟁적 목적을 위해 단기적 이익의 희생(sacrifice of short-term profit)을 감수하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단기적 이익의 희생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공동의견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동 의견서는 단독의 거래거절이 셔먼법 제 2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배제적 또는 약탈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함을 전제로, 피고의 행위가 경쟁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경향 외에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Verizon의 행위가 동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적

11) Aspen Skiing Co. v. Aspen Highlands Skiing Corp., 472 U.S. 585 (1985).

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배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Verizon의 입장에서는 경쟁사업자들에게 통신법의 규제를 받는 가격으로 전화망접속을 허용하는 도매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거래를 하는 것이 더욱 이윤이 클 것이므로, Verizon이 통신법에 의해 강제된 접속허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단기적 이익의 희생요건이 서면법 제2조 위반인 독점화의 일반적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원래 단기적 이익의 희생요건은 서면법 제2조 위반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약탈적 가격설정 에 특유한 위법성 판정기준으로서 Brooke Group 판결¹³⁾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가격과 무관한 행위유형들에 대하여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할 경우 단기적 이익의 희생이 부정되면 곧바로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¹⁴⁾ 또한 단기적 이익의 희생을 독점화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친경쟁적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반대로 반경쟁적 행위를 과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¹⁵⁾ 예컨대, US Tobacco 사가 경쟁사들의 제품을 상점진열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사용한 책략들은 단기적 이익의 희생과 무관하게 배제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¹⁶⁾ 고위험·고비용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자의 경우 단기적 이익의 희생은 인정되나 이들의 기술혁신이 배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 고의 기준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소위 “고의” 기준(“intent” test)은 Colgate 판결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대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은 단순한 주관적 동기 뿐 아니라 당해 행위의 객관적 효과의 심사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변질시켰다.¹⁷⁾ 나아가 최근의 경향은

12) Gregory G. Wrobel, *New Clothes for the Emperor? Tailoring Section 2 Standards for Predatory and Exclusionary Conduct*, 18 *Antitrust* 26 at 29 (2003).

13) *Brooke Group Ltd.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509 U.S. 209 (1993).

14) Robert A. Skitol, *Correct Answers to Large Questions about Verizon v. Trinko*, *Antitrust Source* at 3 (May, 2004), available at <http://www.abanet.org/antitrust/source/may04/skitol.pdf>. 희생이익기준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로, Mark R. Patterson, *The Sacrifice of Profits in Non-Price Predation*, 18 *Antitrust* 37 (2003) 참조.

15) Einer Elhauge, *Defining Better Monopolization Standards*, 56 *Stan. L. Rev.* 253 at 268-94 (2003).

16) *Conwood Co. v. United States Tobacco Co.*, 290 F.3d 768 (6th Cir. 2002).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문제된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¹⁸⁾ 그러나 본 사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Aspen 사건에서의 피고측의 동기 내지 의도와 본 사건 피고의 그것을 엄밀하게 구별함에 따라, 하급법원들의 이와 같은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이미 연방제5고등법원은 본 사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당해 거절이 정당한 사업전략에 의한 것인지 반경쟁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신중히 판정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¹⁹⁾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자의 고의 내지 동기에 대한 강조는 문제된 행위의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을 행위자의 반경쟁적 고의의 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고에게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에 덧붙여 반경쟁적 의도에 대한 추가적 입증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²⁰⁾

3. 필수설비의 원칙

필수설비의 원칙은 하급심 판결들에 의해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나 그 윤곽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소위 의도 기준과의 경계도 뚜렷하지 않아 양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들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²¹⁾ 그리고 본 사건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은 하급심들이 개발한 이 원칙의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²²⁾ 그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가 허가되었을 때 필수설비의 원칙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첫 선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동 법원이 필수설비의 원칙을 한번도 승인한 바가 없음을 선언하면서, 동 원칙에 대한 Areeda 교수의 비판²³⁾을 긍정적으로

17) *Byars v. Bluff City News Co.*, 609 F.2d 843, 860 (6th Cir. 1979) (“중요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심리상태가 아니라...오직 부당하게 반경쟁적인 경우에만 ‘불공정’ 내지 ‘약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의 관행의 전반적 효과이다”); *Mr. Furniture Warehouse, Inc. v. Barclays Am./Commercial, Inc.*, 919, F.2d 1517, 1522 (11th Cir. 1990)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을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점유율을 늘리거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기타의 불법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반경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고안된 경우뿐이다”).

18) 대표적인 예로, *Rural Telephone Service Co. v. Feist Publications, Inc.*, 957 F.2d 765 (10th Cir.), cert. denied, 113 S.Ct. 490 (1992).

19) *Am. Cent. E. Texas Gas Co. v. Union Pac. Resources Group Inc.*, 2004-1 Trade Cas. (CCH) 74,271, at 98, 227 (5th Cir. 2004).

20) *Skitol*, supra note 14, at 5.

21) *Aspen Highlands Skiing Corp. v. Aspen Skiing Co.*, 738 F.2d 1509, 1519-20 (10th Cir. 1984).

22) *Aspen 판결 및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504 U.S. 451 (1992) 참조.

23) Phillip Areeda, *Essential Facilities: An Epithet in Need of Limiting Principles*, 58 Antitrust L. J. 841 (1989).

인용하였다. 즉,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자들과 필수설비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i) 시장지배적사업자나 그 경쟁자들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시설에 투자할 동기를 감소시키고, (ii) 가격과 거래조건의 규제라고 하는 법원이 담당하기 곤란한 책무를 부담시키며, (iii) 독점금지법의 최대의 적인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통신법상 전화망접속이 강제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에는 동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비록 연방대법원이 동 원칙의 명시적 수용과 부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후의 소송들에서 동 원칙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분명하다.²⁴⁾

4. 지렛대 이론

한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인접한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소위 독점지렛대행위, monopoly leveraging)가 셔먼법 제2조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연방고등법원들 사이에 혼선이 있었으며, 본 사건 판결은 이러한 혼선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있다. 즉, 독점지렛대의 사용은 셔먼법 제2조가 금지하는 독점화기도(attempt to monopolize)의 요건인 “다른 시장의 독점화에 성공할 위험한 개연성”을 갖추어야만 위법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상치되는 하급심 판결들²⁵⁾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²⁶⁾

5. 통신법 위반과 셔먼법 위반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통신법상의 접속허용의무 위반사실만으로는 셔먼법 제2조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은 연방제10고등법원의 Goldwasser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²⁷⁾ 연방제11고등법원에서 상고된 한 사건이 본 판결을 고려하여 재심리 되도록 파기환송 되기도 하였다.²⁸⁾ 또한 본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통해 1996년 통신법 체제에 힘겹게 적용하

24) Dean Ringel, Monopolies and Joint Venture, 1426 PLI/Corp 129 at 164 (2004).

25) 예컨대, Berkey Photo Co. v. Eastman Kodak Co., 603 F.2d 263 (2d Cir. 1979).

26) Ringel, supra note 24, at 170-71.

27) Goldwasser v. Ameritech Corp., 222 F.3d 390 (7th Cir. 2000). 또한 Sun Microsystems, Inc. v. Microsoft Corp., 333 F.3d 517 (4th Cir. 2003) 참조.

28) Covad Communications Co. v. Bellsouth Corp., 299 F.3d 1272 (11th Cir. 2002), vacated by 124 S.Ct. 1143 (2004).



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 논자도 있었다.²⁹⁾

그러나 통신법상의 접속허용의무 자체가 전화역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통신법상의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이러한 접속허용의무를 강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본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판결이 반경쟁적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독점금지법상의 강력한 구제수단인 3배배상을 부정한 것은, 통신법이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창설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마련된 전술한 유보조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³⁰⁾

맺으며

미국 독점금지법상 단독의 거래거절은 전통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온 행위유형이다.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던 몇몇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판결은 비록 독점사업자라도 거래거절의 원칙적 자유를 갖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원자재와 전문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기술혁신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이며 강력한 원칙³¹⁾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 판결은 단독의 거래거절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³²⁾ 둘째, 동 판결은 결과적으로 지역전화시장을 경쟁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1996년 통신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³³⁾ 전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는 후속 판결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으나, 후자의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입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미 하원 법사위 의장인

29) Lin Hughes, *Antitrust and Business Litigation*, 67 *Tex.B.J.* 20 (2004).
 30) Jonathan Rubin, *Refusals-to-Deal after Trinko*, available at www.antitrustinstitute.org/recent2/294.cfm 또한 본 사건 판결 선고전의 문헌으로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Daniel L. Cendan, *Filling the Gaps: A Principled Approach to Antitrust Enforcement Provides a Necessary Comple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78 *N.Y.U.L.Rev.* 1755 (2003) 참조.
 31)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at 296 (2d ed. 1999).
 32) Skitol, *supra* note 14, at 1.
 33) 동 판결의 선례로서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 Adam Candeb, *Network Interconnection and Takings*, 54 *Syracuse L. Rev.* 369 (2004) 참조.

Sensenbrenner 의원과 동 위원회 간부인 Conyers 의원이 공동으로 본 사건 판결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통신분야에 있어서 독점금지 구제조치의 명료화에 관한 법률(Clarification of Antitrust Remedies in Telecommunications Act of 2004)”로 명명된 이 법안은 클레이튼 법을 수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기존 지역전화사업자가 본 사건에서 문제된 통신법상의 접속허용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업계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하원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³⁴⁾

34) Margaret Boles, House Members File Legislation To Undo Trinko Antitrust Case, 70 Telecommunications Report 6 (2004).